#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10호)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17.

고성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20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11. 28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#### 2. 개정이유

인구증가 신규 시책인 결혼축하금 지원사항 신설 및 전입축하금 지원 신청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결혼축하금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3조)
  - [별지 제1호서식] 결혼축하금 해당항목 신설
- 나.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지원 삭제(안 제3조)
  - [별지 제1호서식] 기타 예방접종지원 해당항목 삭제
- 다. 전입세대 주택개량 융자금, 빈집 알선ㆍ수선ㆍ정비비, 지붕개량비 지원 삭제 (안 제3조)
- 라. 전입축하금 지원 신청자에 대해 인구시책 지원 신청기한(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) 적용에서 제외함(안 제4조, 부칙 제2조)
- 마. 기업근로자 전입 지원금 지원 횟수(최초 1회) 한정(별표)
- 바.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성별 구분 항목 신설(별지 제2호서식)
  -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반영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: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예정

#### 다. 합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 - 검토의견: [별지 제2호서식]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성별 구분 항목 신설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□ 해당조항: 별지 제2호서식	□ 성별 구분 항목 신설을 제안함 [법령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 결과 통보 (복지지원과-39359호 (2023.10.13.)]	□ 별지 제2호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반영

#### 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3-1561호
  - 가) 예고기간: 2023. 10. 13. ~ 2023. 11. 2.(21일간)
 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제출 1건(고성군 보건소)
  - 제3조(지원대상 및 내용) 제1항제1호에 기타 예방접종 지원은 로타 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지원 폐지로 삭제

입법 예고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제3조(지원대상 및 내용) ① 군수는 인구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 이하생략 1. 출산장려 사항은 출산장려금 지급, 기타 예방접종지원, 한방첩약 지원으로 하되,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(기출산한 자녀가 있는경우)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한다. 이하생략.	로타 바이러스 예방 접종이 선택 예방 접종에서 국가 예방 접종으로 전환되어 전국에서무료로 예방 접종(2023.3.6.) [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(보건행정과-20962호(2023.11.2.)]	- 반영 제3조(지원대상 및 내용) ① 군수는 인구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한다. 이하생략 1. 출산장려 사항은 출산 장려금 지급, 한방첩약 지원으로 하되,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 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 녀(기 출산한 자녀가 있 는 경우)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. 이하생략.
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서: 붙임

#### 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O 인구증가 신규시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- O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- 기타 예방접종 지원 삭제(안 제3조제1항제1호)
  -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의 국가접종 전환으로 별도 지원이 불필요하여 기타 예방접종 지원을 삭제하고 별표의 해당 내용을 삭제함.
- 전입세대 주택개량 융자금, 빈집 알선·수선·정비비, 지붕개량비 지원 폐지 (안 제3조제1항제5호)
  - 별도의 사업지침으로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폐지·미시행 사업 정비 필요에 따른 내용 삭제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.
- 신규시책으로 "결혼축하금" 신설(안 제3조제1항제7호)
  -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내 주민등록을 둘 경우 200만원을 3회 분할 지급하여 결혼 장려와 인구증가를 유도함.
- 전입축하금 지원기준 충족 시 6개월 이내 신청 규정 폐지(안 제4조)
  - 민원24 전입신고 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생기는 미신청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로, 읍면장은 전입신고 접수 시 본 조례에 따라 전입축하금 외 다른 지원내용도 안내하여야 하므로 신청 기간 폐지와 함께 민원24 전입신고 시의 안내 방법을 달리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- 전입근로자 전입 지원금 지원 횟수 기재(별표)
  - 재전입 등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지원 횟수 제한은 적절함.
-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,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구증가 신규시책인 결혼축하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거나 별도로 지원 자격을 정하는 사업 등을 정 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.
- 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- 7. 토 론 : 없음.
- 8. 심사결과 : 2023. 11. 28. 원안가결